

『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김상조 의원

2. 제안이유

-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, 일자리, 노인관계기관, 효도수당, 장수수당 지원 등 구체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 (안 제1조 ~ 제4조)
 - 시장의 노인 사회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문화 증진의 책임 부여
-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(안 제5조 ~ 제7조)
 -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등
 - 노인복지시설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-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(안 제8조 ~ 제13조)
 - 일자리사업 계획 및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
- 경로당 운영 및 지원 (안 제14조 ~ 제17조)
 -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
 -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
- 노인관계기관 지원 (안 제18조 ~ 제22조)
 - 노인관계기관(노인회 및 노인봉사단체 등)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
-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증진 (안 제23조 ~ 제31조)
 - 효행교육의 장려 및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
 - 효도수당 지원 및 노인장수수당 지급 등
- 다른 조례의 폐지 (안 부칙 제2항)

4. 참고사항

-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, 평생교육, 복지시설, 효 문화 증진, 효도수당, 노인 장수수당 지원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8조에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발굴 및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
- 안 제18조에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대한 사항과
- 안 제24조에 학생들에 대한 효행교육을 장려토록 하고 경로의 달에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26조에 4세대 이상 효도가정에 대해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,
- 안 제 27조에 9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연 2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효도 수당 상향 조정 및 장수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지속적인 추가 비용을 수반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